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40호

「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주변시세가 과도하게 낮은 지역 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시 사업자가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, 임대주택 공급·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공주택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663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(044-201-4580, 044-201-4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